

# 선박검사관련 규정 등 제 · 개정 사항 (2005년 1/4분기)

해양수산부 제공

## ▣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및 검정기준 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-77호, 2004. 12. 17)

### ○ 개정사유

새로운 선박용 물건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, 국제 기준 수용 및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

### ○ 주요내용

- 가. 전폐형 구명정의 정원 산정, 표시확인 검사 방법 개정 및 자유낙하구명정의 자유 낙하진수시험의 신설
- 나. 위크링크의 형식 승인 시험 기준 신설
- 다. 고정식 포말 소화 장치용 휴대식 발포노즐, 폼모니터 및 폼 배출기의 형식승인 시험 기준 신설
- 라. 고정식 탄산가스 소화장치용 밸브, 관, 호스 및 매니폴드의 형식승인 시험 기준 신설
- 마. 품목별 검정 항목 및 발취수량 개정

○ 시행일 : 2005. 1. 16

## ▣ 알루미늄선의선체구조기준 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-82호, 2004. 12. 29)

### ○ 개정사유

알루미늄선의 건조에 대비하여 알루미늄선의선체구조기준 마련

### ○ 주요내용

- 가. 알루미늄선의 건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재질의 종류, 화학성분, 열처리 및 기계적 성질을 정함(제5조)
- 나. 용접공의 기량시험 및 자격 등을 정함(제6조)
- 다. 알루미늄 재료의 용접방법 등을 정함(제7조 내지 제14조)
- 라. 선체, 갑판 및 격벽 등이 요건을 정함(제15조 내지 제24조)
- 마. 선체 등의 방식 및 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25조 내지 제28조)
- 바. 선체 등의 강도, 선체의 두께, 늑골, 갑판보, 기둥 등 주요부재의 치수 등을 정함(제29조 내지 제56조)
- 사. 타 및 타 관련장치의 강도 등을 정함(제57조 내지 제77조 관련)
- 아. 현창, 창구 및 개구 등의 강도 및 치수 등을 정함(제78조 내지 제87조)
- 자.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88조 내지 제92조)

○ 시행일 : 2005. 2. 1

▣ 선박만재흡수선기준 개정  
(해양수산부고시 제2004-83호,  
2004. 12. 29)

- 개정사유  
국제만재흡수선협약 개정(2003. 6. 5  
채택, 발효 2005. 1. 1)사항 국내 수용
- 주요내용
  - 가. 용어의 정의 신설 및 조문 정리(제2조)
    - 용골이 경사진 선박에 대한 길이의 정  
의 신설(제1호)
    - 목갑판을 설치한 선박의 견현용깊이  
산정방법 변경(제6호)
    - 풍우밀, 수밀, 선교루, 선미루, 선수루,  
전통선루, 저선미루, 선루갑판의 정의  
신설(제9호, 제10 및 제14호 내지 제  
19호)
    - 경사진 격벽을 가진 선루의 길이 정의  
신설(제22호 나목)
    - 선루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 및 2층으로  
되어 있는 경우의 현호의 정의 신설(제  
27호 다목 및 라목)
  - 나. 계절별 만재흡수선 표시를 항행구역에  
따라 적용되는 계절선만 표시하도록 함  
(제10조)
  - 다. 하기견현 산정방법 개선(제10조)
    - 견현갑판 리세스에 따른 하기견현 수  
정 신설(제4호)
    - 선수높이에 의한 하기견현 수정(제5호)
- 시행일 : 2005. 1. 1

▣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(해양수산부  
고시 제2005-2호, 2005. 1. 13)

- 개정사유  
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화물선의 방수복 비치  
기준 강화 등 국제인명안전협약(SOLAS) 개정  
사항을 수용하고, 야간에 물에 빠진 선원의  
식별 곤란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  
하여 어선 구명동의에 전등을 설치하는 등  
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- 주요내용
  - 가. 연해구역 항행선박의 구명정 또는 팽창  
식구명뗏목의 비치기준을 명확히 함.  
(제75조제2항)
    - 섬주위만 일주하는 여객선은 구명뗏목  
과 부명부기(구명부환)의 비치수량 비  
율을 20:80으로 하고, 그 외는 50:50  
으로 함
  - 나.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화물선에 비치해  
야 하는 방수복 수량을 전 선원의 수와  
같도록 함(제88조제1항)
  - 다.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관리선의 구명뗏  
목 비치 면제(제95조)
  - 라. 야간항해를 하는 국내항행 여객선 및 10  
톤이상 어선에도 구명동의용 전등 비치  
(제101조)
- 시행일 : 신조선 2005. 3. 1  
구명동의등(현존 2종선 및 10톤이  
상 어선, 연해구역이상 4종선)  
2006.7. 1  
방수복 비치 2006. 7. 1